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오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 jh7006@klri.re.kr

I. 연구의 목적

1.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존 산업의 비대면 전환과 코로나팬데믹의 영향

산업부문,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비대면”¹⁾에 의한 사업활동은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이 중시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과 법제도의 설계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융복합 현상으로 기존의 산업부문에서 중심이 되어 왔던 사업활동의 형태는 “비대면 활동”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확인과 동일성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대면에 의한 사업활동이 매우 중시되었던 의료부와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원격의료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첨예하게 논의되었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안전의 측면과 시스템 운영, 설명의무 등의 쟁점들이 비대면으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등과 관련된 정보보호와 정보통신산업이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을 막는 은 산분리원칙으로 인하여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듯 과거 대면의 특성을 가진 산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마찰과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소비자의 편의성 및 산업의 효율적 성장을 배경으로 점진적인 진행이 있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코로나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영역에 변화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침체를 가져오면서, 다양한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을 회전시켰으며, 경제·산업지도의 커다란 변형을 일으키게 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다양한 쟁점과 논란을 안고 진행되어 온 “비대면” 산업의 영역변화는 최근의 코로나팬데믹에 의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의 강력한 동인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접촉방식에 의한 거래”가 코로나팬데믹에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상황은 비대면산업의 영역확대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인정하고, 이를 육성·촉진해야 할 대상으로 위상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비접촉·비대면”이라는 거래상 특징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이 상호 간에 부합되면서, 새로운 산업형태로서의 “비대면산업”은 비약적 발전가능성과 육성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1) “비대면”과 함께 동일한 의미로서 “언택트(untact)”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언택트(untact)” 표현은 정식 영어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4월 “언택트(untact)”를 순화대상어로 지정하고, “언택트 서비스”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순화어로서 “비대면”이란 표현을 정하였다.(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View.do?mn_id=158&imprv_refine_seq=20792&pageIndex=1, 2020.2.9. 방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택트(untact)”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비대면”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비대면산업”이 가지는 기업·소비자의 효율성 및 편의성은, 기업입장에서 경제활동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소비자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기반에서 생성되는 경제활동의 편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과 편의성은 불가피한 비접촉·비대면 필요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미래에서 달성되어야 할 스마트사회의 기본적인 배경과 바탕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비대면경제의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비대면산업”의 등장은 육성·촉진의 대상으로서 새로운 신산업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경제질서와 시장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 및 경제주체 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0년 11월에 본격적으로 비대면산업의 육성과 관련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이하,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 한다)이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발표하였다.²⁾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 혁신기업 성장 가속화”와 “코로나19 계기로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 일상화”를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³⁾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기업·소비자의 효율성과 편의성”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으로서, 비대면 경제는 ①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소비, ② 기업에는 맞춤형 생산을 통한 고정비용절감의 생산혁신, ③ 경제구조는 물리적 제약의 소멸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활성화 촉진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8가지 비대면 유망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3가지 방향, 즉 “① 비대면 규제 개선, ②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③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⁵⁾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비대면산업으로 전환 양상과 함께,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아울러서 비대면 산업의 육성·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설계와 규제개선에 관하여는 기존의 대면원칙 산업에서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상 도출되었던 법제도적 쟁점의 해소방안이 필요하며, 새롭고 급격하게 변모·등장하는 비대면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법령정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의 주요 경제플레이어로서 기업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시스템의 마련과, 동시에 시장 내에서 산업참여자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및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에 법제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분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내용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산업에 관한 개관과 현황 및 동향 파악을 내용으로 구성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비대면 산업 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규제수요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고, 신규 규제수요 등을 발굴하여 비대면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설계 등을 분석하며, 비대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기업지원을 위한 법제 구성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방안 등을 검토한다.

2. 비대면산업의 개념과 범위·분류

비대면산업에 관한 개관과 현황 및 동향 파악에 관한 내용은 새로운 산업군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비대면산업”의 개념 및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 검토한다. 비대면산업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근거한 거래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로써 인식되어 왔었기 때문에, 과거 기존의 논의는 새로운 산업군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대면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기존 대면원칙의 산업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산업군과 새롭게 비대면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여 형성되는 산업군을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개선과 제도설계의 기본적인 배경과 지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현재 경제질서와 시장에서 대면산업과 비대면산업이 공존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충돌의 문제 및 육성·지원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 기본적인 법제도설계의 고려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내와 국외 비대면산업 관련 현황과 육성정책 및 제도운영사항을 수집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망라적인 사례수집은 지양하고, 규제개선, 지원시책, 생태계조성의 논의에 관련성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2)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11. 19. (이하,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 한다)

3)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p.1.

4)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p.2.

5)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p.5.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비대면산업 범위 분류

| 유망분야 | 정책 추진 내용 |
|---------|--|
| 금융 | ▶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파 신원확인, 비대면보험, 대출상품, 환전·해외송금, 결제, 보안규제합리화, 진입규제 완화 |
| 의료 | ▶ 스마트 의료 인프라 및 건강 돌봄 시스템 구축 스마트 의료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 |
| 교육/직업훈련 | ▶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교육인프라, 교육콘텐츠, 직업훈련 |
| 근무 | ▶ 기업의 재택·원격근무 확산 지원 원격근무 활성화, 원격근무 고도화 |
| 소상공인 | ▶ 사업장-제조설비 등 비대면 처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판로, 스마트화 |
| 유통/물류 | ▶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 유통일반, 농축수산물유통, 육상물류, 물류기술 |
| 디지털 콘텐츠 | ▶ 비대면 디지털 콘텐츠 확충 및 OTT 시장 활성화 비대면 콘텐츠, OTT 시장, 저작권 |
| 행정 | ▶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비대면·맞춤형 서비스 제공 비대면 공공서비스, 비대면 맞춤형행정 |

출처: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11. 19., pp.6~15”에서 항목별로 발췌하여 작성



3.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설계

비대면 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과 상황, 고려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제개선과 제도설계에 관한 내용을 연구를 진행한다. 대면원칙의 산업,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을 전제로 설계되어 온 법제도와 규제체계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며, 규제의 부적합한 적용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비대면 산업부문의 등장으로 제도 운영과 규제체계가 미비 또는 부재한 상황인 규제지체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하여 일시적인 규제유예 등의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에서는 비대면 산업에서 발생하는 규제문제의 해소와 제도설계의 수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규제개선에 관한 정책방향으로 규제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항들에 대하여 법령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해당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도적인 검토와 법령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법제개선의 제언을 한다.

4. 비대면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 기반 조성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와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시책,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및 지원법제에 관하여 검토 분석한다. 비대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과 유사·동일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8대 비대면 유망부문”과 관련하여 해당 부문별로 차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특별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비대면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등에 대하여 분석과 법제개선의 제언을 한다.

한편,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과 함께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조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검토 분석하도록 한다.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조성은 “플랫폼경제” 또는 “플랫폼산업” 등 별도의 개념으로 논의되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경제·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고, 비대면육성의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법제도적 검토와 제도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 같음하도록 한다. 특히, “플랫폼경제·산업”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문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보호 문제,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의 문제 등은 비대면 산업의 논의와 플랫폼경제·산업의 논의에서 중첩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경제·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함으로써, 중첩되는 쟁점에 관하여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일반적이고 총괄적인 법제도적 제언으로 같음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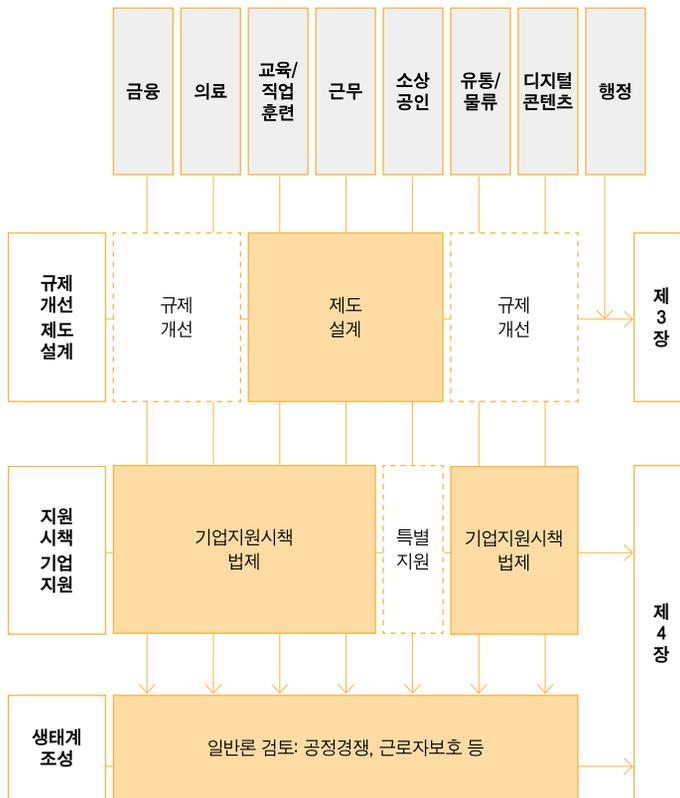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제도기반 조성 내용

| 목표 | 방향 | 구체적 내용 | |
|----------------------|-----------------------|---|-----------------------------------|
| 비대면 규제개선 | 신산업창출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 비대면 관련 규제샌드박스 조기 법령 개정 | 자율주행로봇, 드론, 통신, 자동차, 재외국민진료 |
| | 생활편의 규제개선 | 비대면거래·서비스 활성화 → 안전·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전자고지, 보안인증, 비대면거래, 비대면심사 |
|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 | 단계별 성장지원 | 맞춤형 지원 | 창업 → 성장 → 해외진출 |
| | 기술고도화 | 비대면 기업의 혁신원천인 비대면 연관기술 고도화 | 원천R&D, 맞춤형R&D, R&D혁신공간 |
| | 글로벌시장 선도 | 초기 시장 수요창출, K-비대면 표준화 지원 | 초기수요 창출, 디지털 수출, 표준화 |
|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 | 공정경쟁 확립 | 공정거래·소비자보호, 경쟁촉진·독과점규율 | 기반구축, 전자상거래, 경쟁촉진, 독과점방지 |
| |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 플랫폼노동자 고용·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근무 여건개선 |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자보호, 노무계약개선 |

출처: 「관계부처 합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 11. 19., pp.16~23」에서 항목별로 발췌하여 작성



정부정책에 따른 비대면 산업 분류와 기반조성 관련 연구 프레임



출처: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안」(2020.11.19.)에 따른 비대면산업 분류와 제도기반조성 사항을 재구성하여 필자가 연구프레임으로 재작성함

III. 기대 효과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산업법제에 관한 내용과는 다른 연구 수요에서 시작하게 된 특징이 있다. 즉, 경제상황과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산업법제의 변화와 추이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에 의한 충격을 경제와 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은 연구내용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의 제공을 위하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체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기반의 법제도적인 제공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볼 수 있다.